

10-60 대학원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내규

2014. 6. 1. 제정

2017. 8.22. 개정

주무부서 : 대학원지원팀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중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대학원생에게 지원되는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금(이하 “본 지원금”이라 한다.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 대상) ① 지원 대상은 본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과 연구등록생으로 한다.

② 재학생이라 함은 대학원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한 자로 본 대학교가 지정한 원칙에 의거 등록금을 수납한 자를 의미한다.

③ 연구등록생이라 함은 대학원 석사 혹은 박사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 대학원 학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한 등록 절차 따라 등록을 한 자를 의미한다. 다만, 박사 학위 과정생은 수료 후 첫 번째 연구등록을 한 자에 한해 졸업 전까지 연구등록생으로 간주한다.

제3조(지원 범위) 다음 각 호에 명기된 경우에 한해 지원을 한다.

1. 해외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본인이 직접 구두 및 포스터 발표를 한 경우로 해당 발표 실적이 본교에 귀속되는 경우에 한함 <개정 2017.8.22.>
2. 국제학술대회는 규모가 참석 국가 4개국 이상 및 발표 논문이 10편 이상이며 전체 발표 논문(구두 및 포스터 포함) 중 외국인 논문 비율이 50%이상인 경우

제4조(신청 자격) 본 대학교 교원의 추천을 받은 대학원생과 연구등록생으로 한다.

제5조(신청 방법)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 서류를 대학원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신청서 1부
2. 지도교수 추천서 1부
3. 국제학술대회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초청장 또는 프로그램 사본 1부
4. 발표논문 1부
5. 탑승권 또는 출·입국 확인 증빙 서류(여권 등) 1부
6. 항공료 영수증(E-ticket 확인서) 및 결제 영수증 각 1부
7. 국제학술대회 수상 관련 증빙 서류(해당자에 한해 제출) 1부

제6조(신청 제한)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.

1. 동일 논문으로 2회 이상 신청을 한 경우
2. 1년에 2회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<개정 2017.4.14.>
3. 국제학술대회에서 동일 논문에 대해 발표를 한 후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(동일 논문은 1인에 한해 신청 가능)
4. 정부 또는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경우

제7조(심 사) 본 지원금에 신청한 연구 실적 심사에 대한 사항은 교수심사위원회에서 정하며, 교수심사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(지원금 지급) ① 대학원에 배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집행하되, 지역별 한도액 내에서 항공료 또는 등록비 일부를 지원한다.

② 지원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.

지역명	지원 금액
아시아 지역	400,000원 이내
북중미 및 호주 지역	1,000,000원 이내
유럽, 아프리카 및 남미 지역	1,200,000원 이내

제9조(지원금 회수)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된 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.

1. 허위로 성과물을 제출했을 경우
2. 표절이나 조작으로 연구 성과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게재를 취소했을 경우
3. 신청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허위작성을 하였을 경우
4. 정부 또는 타 지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을 경우
5. 동일 논문에 대해 2회 이상 발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

부 칙

이 제정 내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17.4.14.>

이 개정 내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.

부 칙<개정 2017.8.22.>

이 개정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.

